

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김동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2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10. 19.
발의자 : 김동수 의원 등 6명

1. 개정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안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시설물의 유지·보수 비용을 단순 매몰비용으로 인식하여 각종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.
- 해당 노후 시설물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(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제외) 안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함(안 제3조)
-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비함(안 제5조)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비용추계서 : 별첨

5.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7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관련부서 검토의견서

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제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해·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(이하 “재해위험시설”이라 한다)의 보수
2.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신설 및 보수(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)
3.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
4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신설 및 보수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신설 및 보수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자연재해위험 시설물”을 “재해위험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에서 「주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(정비구역을 포함한다)은 제5조제4호 및 제9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제5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5조(지원 대상)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지원 대상) ----- -----
1. 단지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2.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(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) 3. 단지내 주도로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. 재해·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 시설물의 보수 5.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(공동화장실, 놀이터, 파고라, 벤치, 지상주차장 등) 6. 노인정 유지보수 7. 자전거보관대 증설 및 개·보수 8. 단지내 녹지의 식재조성 9.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	1. 재해·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(이하 “재해위험시설”이라 한다)의 보수 2.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신설 및 보수(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) 3.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4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신설 및 보수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신설 및 보수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 규모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. 다만, <u>자연재해위험 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지원 규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재해 위험시설</u> -----</p>

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(제3조제1항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조례개정 후 추가되는 대상단지 총 69개단지 중에서 5개년 지원단위를 적용하여 연평균 14개단지를 증가되는 단지로 추정하였으며, 단지별로 평균 3천만원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하였음.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 고
총 소요액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
공동주택 지원사업	2,10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420,000	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 자체예산